

[붙임]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안전보건관리규정

2. 제·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재난·소방업무 관련 사항 반영 및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처리기준 마련
- 직원의 안전, 화재·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설치 근거조항 마련

3. 주요 제·개정 내용

- 재난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추가
- 도급사업 관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적격업체 선정취지, 안전보건관리비용 기준 운영근거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3년 10월 12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전관리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전관리실
- 담당자(이메일) : 김문영 차장 (mykim7711@hf.go.kr)
- 전화번호 : 051-663-8342
- 팩스번호 : 0505-036-0392

붙임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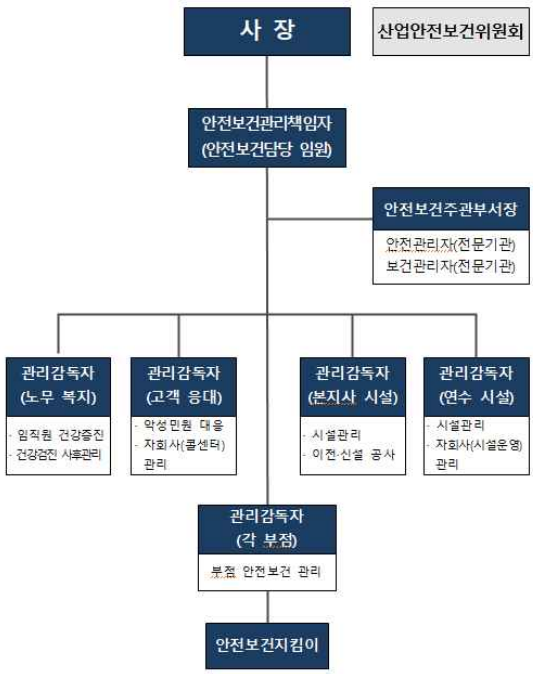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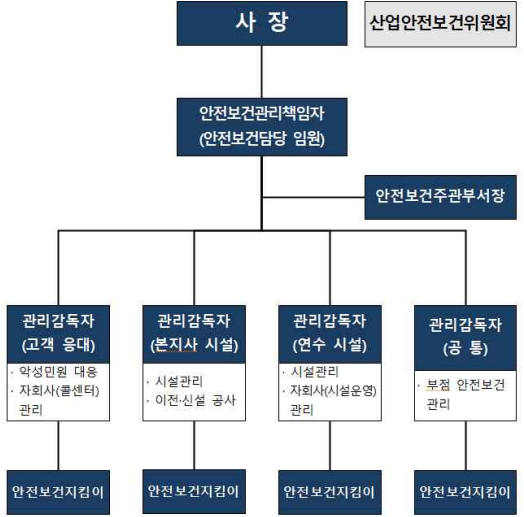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 및 시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직원, 종사자 및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이하 “<u>재난안전법</u>”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 및 시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직원, 종사자 및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령 등 추가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현행과 같음) 16. “재난”이란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7.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8. “소방안전관리”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과 조치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표현정리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른 정의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제4조(기본원칙)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조(기본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공사는 임직원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u>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명시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1. ~ 8. (생략) 10. <u>임직원 및 종사자</u> 위험, 건강장애 방지에 관한 사항 <u><신설></u> <u><신설></u>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1. ~ 9. (현행과 같음) 10. <u>임직원의</u> 위험, 건강장애 방지에 관한 사항 <u>11. 재난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u>12.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u>	도급사업 관련 사항의 분리·신설 (제24조제3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추가
제24조(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① <u>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에 따라 종사자가 공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및 준수사항을 정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 시 이를 반영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u> <u>1. 안전보건교육</u> <u>2. 위험성평가</u> <u>3.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u> <u>4. 안전보건점검</u> <u>5. 위생시설 등 협조</u> <u>6. 안전보건정보 제공</u> <u>7. 작업중지 요청제도</u>	제24조(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① <u>공사는 종사자가 공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u>	관계법령에 따른 표현변경 및 항 분리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② 공사는 도급사업 계약 시 산업재해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적격업체 선정 취지 명시 및 표현정리 (1항과 분리)
<신 설>	③ 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 ③ (생략)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비용) 공사는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에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운영근거 신설
<신 설>	제27조의2(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운영) ① 공사는 직원의 안전과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비고
제28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생략) <u><신설></u>	제28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휴일 및 야간근무를 위한 작업허가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근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휴일·야간근무 관리 철저를 위한 사항 신설
② (생략) <u><신설></u>	제31조의2(재난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u><신설></u>	제31조의3(소방안전관리) ① 사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② 사장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해야 한다. ③ 사장은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제34조(임직원 건강진단) ① · ② (생략) ③ 인사부서의 장은 「복지규정」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대상, 기관 및 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 ⑤ (생략) <u><신설></u>	제34조(임직원 건강진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일반건강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에게 일정, 대상, 기관 및 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u>부칙(1)</u>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서 업무분장 변경 반영 및 표현 명확화 부칙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공사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도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도] 	[별표] 공사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도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도] 	안전보건관리 조직 체계도 현실화